학생상담 규정(3-7-9)

제정일 : 2013.03.0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생이 대학생활 중 직면하는 학업, 인간관계, 가치관 정립 등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학생의 능력개발과 자아실현을 돕고 대학생활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도교수의 학생상담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내용) 제1조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맞는 상담을 진행한다.
① 일반상담(학사안내, 전공지도, 수강지도, 신·편입생, 복학생 적응 등)
② 취업상담 및 지도
③ 학업부진상담(학사경고) 및 지도
④ 학교생활에 대한 상담 및 지도

제3조(대상) 학생상담 및 지도는 해당 시점 재학생을 기준으로 한다.

제4조(운영) ① 학생 상담에 관한 지도교수의 배정과 상담의 진행은 해당 학과교수들의 회의를 통하여 지도학생을 배정하며, 상담은 지도교수가 진행한다.
② 학생상담과 관련된 학과별, 교원별 상담실적결과 등 전반적 사항은 학생처에서 총괄한다.(개정 2018.07.16).
③ 상담은 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해 개인 상담을 원칙으로 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8.07.16.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개정범위) 직제규정 제25조(타 규정 적용) 및 전략기획18-0656(2018.07.16.) ‘직제 변경에 따른 규정 내 직제명칭 일괄 개정 계획(안) 보고’에 따른 개정범위는 다음과 같다.
제4조제2항 중 “교학처”를 “학생처”로 한다.